〔韓國造景學會誌, Vol. 21 No. 3 pp. 116~146 1993年 10月〕

학술분과 위원회 제1차 세미나

—조경계획 및 설계분과—

학술분과 위원회 제1차 세미나

『우리나라 도시경관의 과제』

■ 일시 : 1993년 7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세미나실
■ 좌장 : 이규목(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발표자 및 내용

□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황기원
□ 도시경관의 형성과 조경가의 역할	김영대
□ 독일의 도시경관관리 — 개념, 제도, 사례	김기호
□ 서울시의 도시경관관리 사례	김진환
□ 일본의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제도	박문호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황 기 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1. 도시개발과정과 경관의 변화

1) 도시개발과정

도시는 다른 모든 정주환경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조성된 생활환경이지만, 그 개발에 따른 인공화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개발과정"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계획사업과,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개발사업이 누적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도시 개발의 일차적 목적은 인간이 정주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직접적인 조건인 환경과는 달리 '경관'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기 쉽다.

2) 도시경관

都市景觀을 다각도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논의에서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과 잔존한 자연환경이 사람에게 시지각된 '이미지'라고 풀이하고자 한다.

즉 도시는 사람의 도시적 생활을 담아주는 그릇인 '空間'이며, 그 그릇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주어진 삶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環境'이다. 그것에 체험이 담기고 의미가 붙으면 '場所'가 되고, 그것이 사람의 눈에 시지각되어 이미지로서 형상화되면 '景觀'이 된다.

도시경관도 도시개발과정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그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原生景觀(primitive landscape) 또는 素景觀(original landscape)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작용과 자연의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 변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그 결과물인 것이다.

도시경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질구조, 토양, 수문, 기후 등이 형성하는 환경의 큰 골격이자 생태계의 형성 유지 기반인 '地盤(land base)'과, 그 위에 놓여서 생육되는 모든 동식물과 그 위에 구축되는 모든 인공물(건축물, 구조물)인 '地被(land cover)'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은 종전의 경관이 주로 시지각되는 지피상태에 국한하는 것에 비해서, 그 지피를 받쳐 주는 생태적 기반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점에서 ESSD개념과 접합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반) (지피) (경관)
land base+land cover=landscape

3)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변화는 크게 인공화, 입체화, 도시화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人工化'는 쉽게 말해서 도시의 지반과 지피를 이루는 자연환경요소가 인공환경요소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이때 사람들에게는 자연환경요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호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조성한 인공환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혐오하는 이중적 심리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경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환경의 문제임을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인공화는 '立體化'를 수반한다. 즉 인공환경요소가 입체화되고, 아울러 거대화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 상황에서 도시경관을 보면 원경에서는 산악이나 하늘을 가리므로 조망영역을 축소하며, 근경에서는 그늘, 建物風 등과 같은 환경문제, 위압감과 같은 인간척도 초과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원경에서는 스카이 라인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하는 과제가 발생하고, 근경에서는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과제가 발생하며, 사선 제한, 건축선 후퇴 등과 같은 제도가 나타난다.

그런데 도시를 이루는 대단히 많은 인공물들은 용도에 따라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가지며, 이것들은 대체로 각자의 내부 지향적 논리에 의해 입지함으로써 지표 위에 뒤섞여 입지하는 '混在化' 양상을 일으킨다. 이 혼재화된 인공환경은 기능적으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추하다는 결점이 동시에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형태보다는 집합형태(collective form)에 대해 통제해야 한다는 과제가 발생한다.

2. 현재의 관점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개발과정상에서 형성,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자. 이 작업은 학술적 연구보다는 현행 관련 법규에서 제시되는 경관의 개념을 분석하여 몇 가지 특이한 경관관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이 관점들을 요약해 보면 도시경관을 1)보전된 자연 환경의 외관, 2)개발된 인공 환경의 외관, 3)인공물의 수경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1) 보전된 자연 환경의 외관

이 경우 도시경관은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外觀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도시 내에서 개발 압력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점차 소멸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면, 그 자연환경의 외관인 도시경관이 향상된다는 제도가 발생한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환경은 경관적으로 양호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제도는 상당한 면적을 가진 잔존한 녹지를 보전(신규 훼손 방지)하거나 개선(잔존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지구, 시설을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지정하거나 설치한다. 관련되는 법규 조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내에서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일단의 토지이다(도시계획법 시행령 15-4).
-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경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일단의 토지이다(도시계획법 18-1).
-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도시공원법 3-3).
- 녹지 중에서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이다(도시공원법 10).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계획제도를 살펴 보면 도시경관의 양이 많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찾

아 볼 수 있다. 그 문제점은 주로 도시경관의 '개념'에 관련된 것들로서, 첫째는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즉 유사한 법규 안에서 도시경관, 자연환경, 수림, 녹지, 자연경치, 자연경관지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 뒤섞여 있다. 특히 '자연경관지'라는 용어는 국어 사전에서도 찾기 어려운 말이다. 둘째는 이 개념들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연환경을 생태계라는 환경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경치로만 본다는 관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며, 이는 앞에서 제시한 '지피' 요소를 전혀 무시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는 이 도시경관에 관련된 개념 자체가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도시계획 행위들이 보전, 유지, 보호, 개선 등 유사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행위들을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하는 점이다.

2) 개발된 인공 환경의 외관

이 경우 도시경관은 개발된 인공 환경의 외관이라는 개념이다. 이 때에는 도시경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주로 '美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앞의 경우와 대비된다.

미관이라는 개념 밑에는 기존의 인공환경의 전반적 양상이 양호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도시계획제도는 인공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통제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개별 형태 보다는 집합 형태이다. 관련 법규 조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도시적 이용토지이다(도시계획법 18-2, 시행령 16의 2).
  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 미관 유지
  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 유지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 유지
  제4종 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보존, 또는 전통적 미관 유지
  제5종 미관지구 : 기타 도시의 미관 유지
- '도시설계지구'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도시적 이용토지이다(도시계획법 시행령 16-1).

이 경우에도 도시경관과 미관을 혼동하는 개념의 혼란 문제가 발생하며, 또 개별 건축물 형태를 위주로 규제하며, 집합형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상당한 임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인공물의 修景

이 경우 도시경관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주변을 돋보이게 하는 수경 경관으로 보는 개념이다. 대개 정원 수준의 경관이나, 인공물에 부착, 설치되는 작은 인공물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개념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제도는 첫째 건축물 주변의 조경에 관한 것이다. 즉 건축물이 지어진 대지 안에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는 조경을 하게 하는 것이다(건축법 9-2-2, 동 시행령 15).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주로 수목 식재 위주이며, 부득이한 경우 조경시설물(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경의 구성요소가 매우 편중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보면 주로 '觀賞'임을 볼 수 있다. 즉 통행을 할 수 있거나 들어가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면적 상 불리하게 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건축물이 지어진 대지 안에 일정한 예술조형물을 설치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문화예술진흥법 13).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시행 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제도임은 확실하다.

셋째는 도시 기능상 필요하지만 미관을 저해하는 필요악인 옥외광고물을 통제하거나, 건설공사장의 관리시설의 미관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념의 후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修景'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그 개념 자체가 식재 위주에다가 관상 위주라는 매우 협소하고 편향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관 자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점을 들고자 한다. 셋째는 집행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술품 설치에 따른 부조리라든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통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자 한다.

3. 대책

1) 관점의 전환

여기에서 말하는 '대책'은 당장 실현하여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발표자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도시경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 도시 경관 개념의 외연 확산 : 경관은 물론이고 도시경관의 개념이 매우 다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개념의 외연을 확산하여야 한다. 이 관점의 확산은 특히 정책입안자들이나 도시경관관리 담당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조경계 뿐 아니라 건축계 및 도시계획계 등에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
- 도시 경관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제시한 지반과 지피 개념을 바탕으로 한 도시 경관 메카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도시개발과정의 수정 필요 : 현재처럼 인공적 이용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를 구획, 개발한 다음 잔존한 자연환경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방식을 불식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의 구조를 먼저 설정하여 도시화를 위한 지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인공물인 지피요소를 배분하는 방식을 다시 살려 내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통적 풍수지리설을 따른 도시개발과정이나 Olmsted나 Eliot류의 오픈 스페이스 체계조성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실천적 연구

조경학도들이 함께 연구할 실천적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경관생태학의 도시적 적용 : 복수의 생태계 사이의 생태적 현상을 수평적으로 연구하는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를 도시환경에서도 적용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도시경관의 요소를 재구성하여 자연환경요소와 인공환경요소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모형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도시경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질적 기준의 명시화 : 도시경관의 질적 수준을 판정하는 속성을 구체적 기준으로 명시하는 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 타당성, 객관성, 명시성, 특이성, 보통성, 일상성, 집합성, 규칙성, 자유성, 가관성, 선명도, 완전성, 통일성 등과 같은 속성들이 그것들이다. 이와 병행하여 전문가나 행정당국의 질적 기준과 일반인의 질적 기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평가 및 설계의 체계화 : 도시경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경관설계를 할

수 있는 논리와 기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CAD 및 CG를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제도 개선 모색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과 실천적 연구가 있어야만 근원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비교적 쉽게 개선해 볼 수 있는 제도로서는 현재 도시공원법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공원체계설정지침을 활용해 보는 것이다.

-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 완화를 위한 녹지계통 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도시공원법 시행규칙 4-②).

그리고 제도 개선에 있어 독일식 경관계획(Landschaftplan) 개념을 우리 도시계획 제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응하는 경관영향평가를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시경관의 형성과 조경가의 역할

김 영 대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경관은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인가?

도시경관이란 그 도시사회의 속사정을 되비추는 거울이다. 즉 도시가 지닌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듬살이의 형편을 들여다 보고 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이해하며 나아가서 사람들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곤 한다. 마치 관상쟁이가 손금을 읽듯이, 전문가는 우리가 쌓아올린 도시의 외형을 읽고 해석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손금을 들먹이더라도 관상쟁이는 그러한 손금을 스스로 만들수는 없다. 그런 것처럼 이상도시의 경관이란 그저 관념적일 뿐이고 우리는 그러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도시경관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배여 있지만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결과물일 뿐인가? 도시경관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로 보는 이유 하나는 도시란 것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결집체이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정한 도시경관을 염두에 두고 도시를 만든 것은 아니란 것이다. 시대와 풍토와 인간이 도시를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시경관은 거대한 결과인 셈이다.

이시대 내내 급변해 온 우리의 도시 발전의 과정에서도 애초부터 도시경관을 따졌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우리의 현시라에서도 도시를 만들지, 도시경관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다. 시민과 정부, 그리고 여러 전문가(도시계획가, 건축가, 환경미술가 등)가 비록 그 역할이나 정도는 다르지만 도시경관 이전에 도시 자체를 건설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렸다. 물론 이 전문가 부류에는 조경가도 있다. 각기 의도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목표도 있고 추구하는 이념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도 도시경관은 아무래도 부차적인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시는 스스로 지녔던 질서는 사라지고 여러가지 필요의 선악적 요소가 그냥 섞여 있는 매우 복잡한 곳이 되었다. 특히 대도시는 무표정의 풍경이다. 이 무표정은 더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모든 우리의 도시문제를 대변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의 도시는 이제 쾌적성과 같은 질적 가치를 따져야 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에 당연히 도시도 그 표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경관이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며, 도시경관 개선이란 도시개발 초기단계나 또는 기존 도시의 관리정책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글은 도시경관을 조작의 대상으로 보려는 믿음을 그 바탕으로 한다. 즉 도시경관은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실체인 것이다. 아뭏튼 도시경관이란 공동의 노력으로 빚어낼 수 있는 개연성이 강한 실체라 하자, 그리하여 그 형성에는 조경가가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다분히 아전인수격 풀이이다.

2. 우리의 도시경관에 관한 세가지 교훈

우리의 도시경관을 각기 그 세련된 시각적 구성요소, 즉 번쩍이는 건축미라든지 또는 제법 울창한 가

로수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하나로 보여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우리의 도시경관이 보여주는 그 시각적 경향은 점점 복잡해지고, 몰개성적이 되며 또한 유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TV화면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수도 서울은 세계 어느 수도에 비하여도 한낱 개성없는 도시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섞여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그렇지만 어느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도시경관이다. 아무리 주변의 자연산세가 수려해도 도시의 인조경관은 "비빔밥 경관"같다고나 할까. 고층건물들도 그렇게 서로 다를 수가 없다. 각 외장은 모두 다르다. 서울의 도시경관에서 맥락주의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지방의 대도시나 중소도시라고 해서 나을 것도 없다. 빼어난 도시경관미나 독특한 풍경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사라졌다.

여러 도시경관이 보여주는 심각한 현상 중에서 비교적 시사성이 큰 세가지 현상을 짚어보면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조경가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교훈으로 삼아 보기로 하자.

교훈 1. 중경의 홍망성쇠 : 이상도시 공간구조의 결말

근래 급격한 시각적 변화가 우리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고층 아파트와 대규모 건물의 무분별한 건설이다. 한적한 소도시에서부터 번잡한 대도시 주변에까지 갑자기 출현하는 이러한 시각적 벽은 우리의 동네와 저 먼산을 단숨에 막아버린다. 경관이 본래 시각적인 것이 우선적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직요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한 시각적 충격을 준다. 그것은 새로운 거대한 인조적 "중경"이다.

본래 근경이 우리 것이며 나의 터전 같은 이쪽이라면, 원경은 먼산이며 질서를 던져주는 저쪽이다. 그 사이에서 중경이란 근경과 원경을 이어주는 전이지대이며 이웃관계나 자연관계를 나타내는 가장자리였다. 이제 그러한 중경은 사라지고 있고 큰 장벽과도 같은 새로운 중경이 출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차가운 장벽은 감미로운 사탕맛처럼 분칠하고 화장하여 차갑지도 않으며 거대하지도 않다하고 교태를 부린다. 고층아파트는 저마다 내노라며 색깔의 풍경을 자랑한다. 이러한 중경의 슈퍼그래픽은 분명 우리의 도시경관을 치졸하고 유치하게 만든다. 천박한 중경의 출현이다.

그러한 중경이 출현하게 된 도시는 전통적인 도시공간구조에서나 보는 안정된 구성의 도시스카이라인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다. 이미 토지이용이나 용도지역과 그곳의 건축규모가 서로 이탈해 버린 것이다. 도시지역에 나타나는 이러한 중경의 출현은 우리가 이루어 왔던 모듬살이 방식을 뒤흔들며, 급기야는 우리가 지닌 의식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아무리 잘못된 도시공간구조이며 도시계획 탓이라고 해도, 도시경관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도시가 본질적으로 건전해야 그 경관도 건실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왜곡된 도시경관이 분칠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도시경관을 지배하는 힘은 왜곡된 경제원칙 그것이다.

교훈 2. 화려한 주택박물관 마을 : 분당 신도시 주택설계의 아이러니

지난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최한 "1993 한국의 주거문화 분당 신도시 주택 설계 전시회"는 분명히 그 의의가 대단한 행사였다. 21인의 국내 최고의 건축가들의 작품들은 그 하나하나 개성이 강한 건축미를 자랑하였다. 우리시대 최고의 주택건축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최고의 주거지이며 최고의 도시경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건축적 가치나 계몽적 효과는 별도로 하자. 문제는 이렇게 멋진 주택이 모인 곳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하는 것이다. 개별주택이 지니는 건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무만 있고 숲이 없는 숨막히는 동네가 되기 십상이다. 잘된 건축의 단순집합이 곧 잘된 마을은 아니며, 더구나 조화로운 풍경이 되기 어렵다.

부분은 전체의 일부이되 개성을 발휘해야 한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되 전반적인 틀을 이루고 각 부분을 이끌어야 한다.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은 서로의 어울림 문제이다. 그것은 균제가 지켜지는 맺음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균제감각은 단순한 조형적 차원을 넘어서서 내용적 질서를 유지하는 정신적 차원에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분당에 건설될 이 마을은 그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추구될 지 속단할 수는 없다. 전시회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혹시 단순히 가치있는 집을 진열한 주택백화점이요, 그 모습은 박제된 "박물관경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이다.

교훈 3. 잃어버린 공공의 얼굴 : 오용된 간판문화

마지막으로 도시경관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시각적 요소는 아무래도 간판일 것이다. 우리의 도시나 자연에서 간판홍수는 익히 경험하는 문제이다. 근래에 상업간판도 매우 세련되어 나름대로 그 디자인의 수준을 내세울만 한 것도 많아졌다. 그러나 광고는 그 전달의 효과 때문에 시각구성 상 배타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독불장군격인 간판은 도시경관에서 윤리를 빼앗아버린다.

더구나 아무리 활기찬 거리나 멋진 건축 또는 풍요로운 공원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조성되어도, 그 마무리는 간판들의 차지이다. 피부에 와닿는 요소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경관은 온갖 상업광고나 구호같은 시각정보의 홍수일 뿐이다. 시각공해는 경제적 경관의 필요악인 것처럼 우리의 도시경관을 따라 다닌다. 특히 상업건물에서는 안팎이 뒤바뀐 모습도 나타난다. 아파트 건물에 그 건설회사의 상호가 왜 광고 되어야 하는가? 광고도 직접적인 언어전달 방식이 대부분이라, 강요하는 도시간판일 뿐이지 그 이미지화된 슈퍼그래픽은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것이 허다하다. 슈퍼그래픽끼리 경쟁이다. 슈퍼그래픽은 어느덧 주택회사의 간판이 되었으며, 경쟁적인 치장이 될 뿐이다.

3. 되찾아야 할 조경가의 역할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축의 차원, 나아가서 가로환경의 차원에까지 우리의 도시경관은 회복되어야 한다. 조경가는 그 회복에 앞장 서야 한다. 조경의 설계 및 시공의 단가가 보다 높은 프로젝트가 형성하는 경관의 질이 그렇지 못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조경의 투자는 시간 경과와 함께 그 가치가 더욱 증대하지 않는가. 나무는 점점 자라고 숲은 울창해지며 자연생태는 인간과 자연을 위해서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도시의 자연은 분명히 바람잡이로서 그 역할을 한다. 조경가는 이러한 도시의 자연을 다듬는 일부터 시작한다.

조경가가 도시경관의 회복이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할은 무엇일까? 조경가는 그저 도시계획가나 건축가 또는 환경미술가의 뒷마무리나 하는 마음씨 좋은 미쟁이인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조경가 없는 조경이 엄연히 존재해 왔다. 자연에 순응하며 땅을 모태로 삼아 모듬살이를 이루어 왔기에 현대의 조경학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는 일찌기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과 현대도시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의미심장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도시경관이 겪고 있는 안팎의 상황은 더욱 그러한 이념과 가치를 되짚어 보고 준거의 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도 조경가는 도시경관의 회복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다.

역할 1. 경관계획가 : 토지경관의 구축

조경가가 앞장서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역시 땅을 직접 다루는 일이다. 즉 신도시의 건설이나 도시화의 일선에서 그 공간구조의 형성에 조경학이 지향하는 여러 가치와 기준을 최대한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계획가 및 도시설계가와 함께 조경가의 협업과 분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경가는 땅이 지닌 여러 질서를 이해하고 도시계획가에게 생태적 가치는 물론 환경적 질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제지상주의나 인간이기주의적 발상은 지양하여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억제해

야 할 것이다. 환경생태학적 접근은 도시의 건설과 토지의 이용에 유익한 틀은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곧 올바른 도시경관을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바른 길이다. 도시경관계획은 내부의 질서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공원녹지체계가 도시의 형성에 틀을 제공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도시와 마을을 이룸은 장기적으로 인간적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즉 조경가는 토지경관을 형성한다. 조경가는 이런 경우 "토지건축가"인 셈이다. 이는 결코 낭만적인 아집이 아니다. 조경가는 이런 작업에서는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조경가는 도시계획가와 더불어 고유미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역할 2. 경관조절자 : 전체경관의 통합

도시경관의 형성과 관련한 조경가의 두번째 역할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여러구성요소들이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그것은 집합의 문제이다.

현대도시의 경관이 어떤 그림같은 회화성을 일관성있게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이란 시각적 차원에서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경관은 시각적 장면이나 그림이기 이전에 시민의 일상생활 그 자체이며 그러한 생활을 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의 표현이 어디 그림대로 되겠는가. 다만 그러한 생활도 나름대로 도시차원에서부터 질서있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도시경관은 도시의 각 부분마다 독특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지역별 또는 거리나 동네마다 질서있는 구조가 우선 제시되었다해도 그것을 이루는 각 요소들, 특히 건축적 요소가 저마다 너무 유별나다면, 결과적으로 그 도시경관은 결코 조화로운 분위기를 이룰 수 없다. 우리의 도시에서 건축은 비록 그 나름대로 기능적, 구조적 또는 건축미학적으로 질이 높고 우수하다해도 그 효과를 의도대로 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옆건물보다 더 두드러지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대개 건물끼리 상충된다. 맥락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도시설계는 이런 뜻에서 도시의 부분을 설계적 차원에서 통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도시설계구역으로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경적 접근은 이질적 설계단위인 각 부분을 상호 조정하고 그 상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경에서 시각적 구조의 틀은 지역지구 차원에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수단이 된다. 이 틀은 나아가서 자연요소의 개입에 의하여 강화된다. 조경가는 건축가와 함께 조화미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역할 3. 경관연출가 : 공공경관의 환경구성

조경가의 세번째 역할은 나름대로 주어진 틀에 따라서 도시경관이 의도하는 극적 효과를 도모하는 일이다. 이일은 특히 거리풍경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인 여러 시각적 장치물이나 요소 그리고 슈퍼그래픽 등에 의한 시각효과에 관한 것이다.

거리의 광고 간판은 비록 그 상업적 또는 공공적 목적이 아무리 분명하고 선한 것이라해도 역시 광고는 광고일 뿐이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필수적이지만 아울러 우리의 도시경관은 곧 모두의 모습이며 모두가 바라보는 대상이기에 그 적절한 공공성의 유지는 매우 긴요한 모듬살이의 지혜이다. 광고는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또한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광고와 간판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슈퍼그래픽은 그 질적 수준을 단시간에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입주자와 동네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선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각적 충격이 너무 크다. 색채경관은 본질이 아니다. 이에 전문가는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의 도시경관은 시각연출이 필요하다. 조경가가 그 연출을 주도해야 한다. 그 역할은 연출가로서 도

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의 미적 감각과 문화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통합설계의 일환이다. 도시경관은 모두가 이용하는 길에서도 한꺼번에 보여지는 공공경관이기 때문이다. 거리의 옥외시설물이나 장치, 건물의 외벽, 도로의 포장 등 한 장면을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루는 전체적인 주제경관을 의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은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보여지는 도시의 풍경을 연출하는 시나리오 작가이며, 도시경관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기획가이다. 조경가는 환경미술가와 손잡고 절제미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경관윤리회복의 파수꾼으로서

도시경관은 의도할 수 있는 시작이다. 즉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치부해 버릴 대상이 아니다. 여러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가, 건축가, 환경미술가 그리고 조경가는 도시경관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는 서로 짜여진 분담과 고유한 전문영역이 있다. 전문가 사이에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 되기에는 우리의 도시경관이 너무도 소중하다. 당연히 도시경관의 형성에는 도시민의 공공윤리적 공감대 위에서 긴 시간과 여러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조경가는 이러한 전문가 중에서도 보다 포괄적이며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다. 조경가는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넓게 보는 균형감각을 지닌다.

우리의 도시경관이 보다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 윤리의식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기에 도시경관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은 우월스러운 고급예술도 아니며, 치졸한 저급문화도 아니다. 고유하며 조화가 있고 절제될 때, 우리의 도시경관은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이 지닌 미와 윤리, 즉 생태적 질서는 가장 원론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조경가는 바로 그러한 자연의 미와 윤리를 가장 잘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가이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조경가가 그 분업적 역할을 제시하고 행사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도시경관관리 — 개념, 제도, 사례

김 기 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배경 및 개념

1) 배경

마을이나 도시는 비록 근년의 무분별한 획일적 개발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들 고유의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도시경관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도시경관은 그 도시의 자연적인 상황에 의해 두드러지고 그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여건에 의하여 조건지워지며 그 공간과 그 지역 특유의 건축유형이나 입면형태(파사드)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 지난 수십년동안 도시의 경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소홀이 취급되어져 왔다. 즉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이나 경제의 발전 등이 더 우선되는 과제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정도 경제 및 사회가 안정되어 가며 시민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의 상징으로서 도시의 경관에 깊은 관심과 가치를 느끼고 있다.

2) 개념 정의

도시경관계획이란 도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시민)의 요구, 기대, 그리고 행동양식의 측면을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 즉, 도시형태를 연구, 설계 그리고 통제유도하는 전문분야이다.

도시경관계획은 특히 도시에서 사람(시민)들의 비물리적인 요구를 대변한다. 그리하여 도시경관계획의 과제는 도시계획의 과정에서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교통기술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들과 아울러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여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시경관계획의 목표는 시민이 어느 일정 도시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시민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는 환경정보의 양과 종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도시 경관계획은 현재 및 미래의 시각에서 도시환경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일정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계획의 과정

기존하는 각각의 계획단계에 도시경관적 측면의 고려가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위하여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시정부내의 계획관계부서에는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는(마치 도시기본계획 같은) 도시경관 계획안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계획안에는 시행정부서나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계획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미래의 도시경관상이 구상되며, 자연적 조건 및 경관, 전체도시경관, 가로나 광장, 오픈스페이스 같은 일정 부분경관, 건축물의 유형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경관 계획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 도시경관 형성의 역사에 대한 연구. 둘째, 미래 도시경관의 목표설정. 세째, 도시경관 분석. 네째, 도시경관 설계(좁은 의미로 볼 때 바로 도시경관 계획)

⊙ **도시경관 형성역사** : 오늘날 당해 도시경관의 특징을 이루어낸 지난시대의 도시계획, 설계 모델 이상 등의 탐구

여기에서는 형태적 측면의 모델 탐구뿐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의 탐구도 포함되며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도 적시될 수 있다.

⊙ **도시경관 계획의 목표** : 목표는 도시경관이 향후 어떤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대강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가를 기술한다.
이는 미래도시경관의 모델 내지는 예비설계적 예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각 도시(또는 장소)마다 다르게 수립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도시경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다.

⊙ **도시경관 분석** : 기존의 도시경관을 파악하여 목표에 따라 분석 평가한다. 이는 전체도시의 경관과 다양한 부분구역의 경관을 파악하여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시경관의 어떤 특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대체 될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다.

⊙ **도시경관 설계** : 앞서 역사, 목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시경관의 설계를 위한 구상이 발전된다. 이에따라 구체적 건설대책, 형태 권장사항, 형태 규제사항 등을 위한 자료 등 지침들이 유도되어 질 수 있다. 도시경관 구상이나 지침들은 이들이 결정되기 전에 예시설계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점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경관설계는 경직된 결정이 될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정되며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장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 경관 관리제도

도시경관관리의 속성상 경관관리는 각급 단계의 계획 등에도 고려, 포함되나 독일의 경우 다음의 다섯가지 방식이 특히 경관관리를 위해 유효한 제도적 수단으로 쓰인다.

- 주건축법에 의한 지자체의 건축조례(Stadtgestaltungssatzung)-도시경관조례
- B-Plan(지구상세계획)계획에 의한 관리 유도
- 문화제보호법에 의한 지역경관보전 조례(Gesamtanlagenschutz-Satzung)
- 건설법전(Bau GB)에 의한 보전지구 조례(Erhaltungssatzung)
- 경관협정(Vertragliche Regelungen)

이중 도시경관 조례나 B-Plan은 도시경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려는데 중점이 놓여 있는데 비해 지역경관 보전이나 보전지구는 기존의 경관을 보전하는데 그 중점이 놓여 있다.

1) 도시경관조례

주건축법 73조에 의하여 각 지자체는 건축조례를 수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적용공간 범위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지자체 전체까지 될 수 있어 매우 신축성 있는 제도이다. 이 조례에서는 적용공간 범위내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가능하며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도 규제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경우 파사드(처마높이, 비례구획, 개구부, 색채, 재료), 지붕(형태, 각도, 재료, 색채 등), 창문(크기, 비례, 재료), 입구형태, 발코니, 증축형태, 간판 및 자판기(크기, 종류, 색채, 부착위치)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외에도 옥외안테나, 공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디자인, 대지내 공지의 디자인, 담장의 허용 및 형태, 인동간격,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조례는 다음에 설명되는 B-Plan과 같이 사용될 때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 지구상세계획(B-Plan)에 의한 관리

B-Plan은 건설법전(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해당)에 의한 독일 도시계획의 2단계 실행수단인 F-Plan(토지용계획 : 우리의 도시기본계획 정도에 해당)가 B-Plan의 하나로 도시설계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그 다음단계의 건축행위에 구속력을 갖는 지구상세계획이다.

B-Plan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로부터 건축선, 건물높이 등의 규제를 통하여 건축물의 비례, 건축물의 위치, 건축형식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나 재개발지역 등에 경관 조례와 같이 적용되면 그 효과가 크다.

3) 지역경관보전조례

문화재 보호법(Denkmalschutzgesetz) 19조에 의거 지자체는 州문화재보호국과의 협의에 의하여 지자체 내 일정지역을(가로, 광장 그리고 전체도시경관)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안점은 개별건물의 보존이 아니라 전체 해당지역의 경관이다. 물론 문화재보전구역안의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 및 건축물은 별도로 보호가 된다. 지역보전은 2단계로 이루어 지는데, 첫째 단계는 조례의 공포로서 이에따라 적용공간범위가 확정되고 그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가 유보된다. 두번째 단계는 지역경관의 변경을 일으킬 건축행위의 신청이 있을 시 이는 지방문화재보호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경관보전조례의 공포는 실제에서 상당히 예방적, 방향제시적 영향력을 갖는다. 지역내에서 경관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소득세·종합산정시 감세의 대상이 된다.

4) 보전지구조례

건설법전 172조에 의하여 지자체는 B-Plan에 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 시설물의 철거, 개축, 변경 등을 위한 허가를 유보할 수 있다. 이는 앞에 설명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역경관조례와 그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상호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적인 관점에서의 보전에 관심을 갖는데 비해 건설법전 172조에서는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우선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적으로 조화를 이룬 경관앙상불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따라 주변과 도시계획적으로 아무관계도 없는 독립된 대상물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경관협정

경관협정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내에서 점점 더 그 의미가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지자체나 지자체의 영향이 가능한 사업자는 건축주나 건축가에게 충분한 법적 영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협정은 지자체나 사업자가 해당지역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를 매각(분양)할 때 경관을 위한 건축지침들을 만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 가능하다. 이는 특히 신개발지에 해당되며 기개발지에서는 철거 재개발지에서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지역의 주민(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정 경관요소에 대해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의 자문과 설명 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경관협정은 크게 3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대지분양시 : 지자체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대지분양시 경관적 지침들을 첨부하여 분양한다.
- 토지구획정리시 : 토지구획정리 승인시 토지주나 사업자에게 경관적 지침을 부여한다.
- 보조(장려)금 교부시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혜택시 일정 경관지침을 부과한다.

3. 도시경관 계획 사례

사람들은 어떤 장소(마을, 도시)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전체는 단순한 부분적인

요소들이 합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어느 도시의 시민이나 방문자는 도시를 개개의 건축물을 통하여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의 건축, 즉 도시경관이라는 측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마련이다. 도시경관은 도시(마을)의 고유의 특징적인 도시성격을 나타내며 이는 수백년의 세월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기존이나 계획된 도시경관에 적합하지 않은 신축이나 중축은 경관 저해요소로 느껴질 것이다.

도시경관이 가로망사이의 개별건물, 나무, 그리고 녹지의 임의의 질서없는 무더기 배열에 의한 우연한 결과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는 경관의 관리를 별도의 장기적인 과제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경관관리 사례

김 진 환

(서울시 도시경관과 계장)

1. 현황

서울시의 도시경관과는 1991년 10월14일 3개 계에 18명의 인원으로 발족되었으며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등 거리 미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나 승인전에 사전협의토록 하며, 광고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의 모델을 개발하고 지도·단속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며, 도시설계에 관한 제반 업무와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본 서술에서는 도시경관과 비교적 관련이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 시행중인 사항, 시행을 추진중인 사항과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旣 施行

1)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운영

한강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그간 경제성과 기능위주의 판상형으로 획일화되고 도시경관을 차단하여 왔던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개성미도 창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취지로 1992년 1월1일부터 도시경관심의를 시작하였다.

가. 도시경관 심의대상지역

- 11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립
- 남산경관 관리구역내 개발계획
- 간선도로의 신설 또는 시설물의 전면 交替時

나. 심의 실적

구분	심의 횟수	심의조정건수			
		계	아파트	남 산	도 로
'92	11	164	94	67	3
'93	4	52	24	27	1
계	15	216	118	94	4

다. 심의효과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조형미를 창출하는 설계방향의 전환
- 배치 및 형태의 다양화로 개성있는 아파트 건립유도

- 쾌적한 단지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2) 도시설계의 관리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도시설계 지구는 83년이래 11개지구 약 284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설계를 확정하고 인사동, 이태원동에 대하여도 도시설계 내용에 의하여 건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수용키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받아 도시설계의 기본 골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민원은 조정하여 주고 있다.

가. 도시설계 시행절차

- 도시설계지구 지정 : 입안(구청) → 결정(시청)
- 도시설계의 작성 : 입안(구청) → 승인(시장 단, 100만 m^2이상은 건설부 승인)

나. 도시설계지구 현황

현재 시행지구는 11개지구로 9.4km^2(284만평), 예상지구는 2개지구 0.4km^2(13만평)으로 아래 표와 같다.

〈표 1〉 총11개 지구 9.4km^2(284만평)

區 域 名	位 置	確定 公告日	面 積
도 심 지 구 (3 개 지 구)	세종로, 태평로, 종로, 을지로변 일대	83. 8. 2	1.7km^2
잠 실 지 구	올림픽대로, 송파대로변 일대	84. 7. 4	2.8km^2
테헤란로 지구	테헤란로변 일대	87. 2. 4	1.1km^2
김포가도 지구	김포가도(공항로)변 일대	87. 2. 4	0.9km^2
신촌, 마포 지구	아현로, 신촌로, 서강로변 일대	87. 2. 4	0.7km^2
대학로, 율곡로지구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일대	88. 8. 29	1.2km^2
고 덕 지 구	고덕 중심 상업지역내	86. 4. 15	0.1km^2
목 동 지 구	목동 중심 상업지역내	90. 5. 28	0.6km^2
종합무역센타 주변	종합무역센타 및 주변	86. 2. 5	0.3km^2

〈표 2〉 총 2개 지구 0.4km^2(13만평)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이태원 지구	이태원로변 일대	0.2km^2
인사동 지구	인사동길 주변 일대	0.2km^2

다. 도시설계 심의위원회 운영

도시설계심의회는 도시설계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도시설계 관련 민원의 심사, 조정하며 그동안 심의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심의 실적〉

구 분	심의회수	심의건수	조정건수
'92	17	303	198
'93	7	77	43
계	24	380	241

3. 施行中인 事項

1) 도시경관 종합계획의 수립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경관관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1단계는 관리 방향설정, 2단계는 관리 기본계획 수립, 3단계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1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 현행 경관관리 체계의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형화
- 선진 우수 경관관리 제도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도시개발 정책, 관리기법, 관련제도 등 사례를 조사
- 향후 도시경관관리의 범위나 경관개선을 위한 관련제도 및 정비방안 등 도시경관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

2) 도시설계 재정비방안 연구

83년부터 확정된 기존의 도시설계가 그간 현지의 여건변화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중인 도시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하며, 도시설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확정 시행중인 11개 도시설계 구역에 대하여 도시설계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가. 현행 구역별 재정비의 필요성 분석, 정비방향 제시
- 구역별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재정비의 필요성 판단
- 기존 도시설계 내용의 정비대상과 구체적 재정비 기준제시
- 규제 내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법 및 자율참여 유도기법 개발
- 도시경관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한 요소별 건물높이, 모양, 색상, 건축선, 용도 등
-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제 도입

다. 도시설계의 작성 및 재정비 용역발주 지침서 작성
- 기본구상, 지침서, 설계도의 작성방법 등
- 자치구의 시범사업 및 재정비 지침을 위한 기본방침

4. 추진중인 사업

서울 정도 600년을 계기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한강 연접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

1) 한강 연접지역 경관관리 지침

한강 연접지역 경관관리 지침은 '94년을 목표년도로 행주대교에서 하일동 시계에 이르는 36km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시민공원, 교량, 연접도로 주요지점의 가시권에 대한 경관관리와 주변 환경과 조화있는 개발유도 방안, 강변에 산재된 재개발, 재건축 등 주변 노후, 불량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들 수 있겠다.

2) 서울다운 거리 조성

서울다운 거리조성은 남북 중심거리 정비와 역사탐방로 조성에 대하여 '9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남북 중심거리 정비로는 중앙박물관→시청→3호터널→반포대교→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남북중심거리에 대하여는 가로별 또는 지역별로 경관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역사탐방로 조성에 있어서 경희궁을 중심으로 정동, 인왕산, 세종문화회관 등 주변에 산재된 문화유적을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는 관광산책로 등으로 조성하되, 주변환경과 안내체계를 정비하며 보행자를 위한 종합시설물 설치계획도 수립하게 될 것이다.

5. 향후 추진과제

1) 역사적 시가지의 보전 및 정비

역사적 시가지의 보전과 정비를 위하여 고궁 등 문화재 주변의 경관관리와 건축물 등 보존대상물을 선정, 관리하는 가칭 보전지구 제도를 발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남산, 북한산, 한강 등 주요 경관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축물, 구조물 등의 경관관리

건축물, 구조물의 경관관리 분야로 각종 건축규제로 사실상 改修가 불가능한 소규모 노후, 불량건물을 개수할 수 있도록 배려와, 평지붕화 되고 있는 지붕형태를 저층 건물만이라도 경사지붕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건물의 경관을 가꾸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를 확대지정, 활성화하도록 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현재 분야별로 분산 설치관리되고 있는 정류장, 안내판, 휴지통, 우체통, 공중전화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종합화함으로서 이용에도 편리하고 도시경관도 살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렬식이나 병열식으로 식재되고 있는 가로수를 부분적으로 집단화하여 주요지역에 가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가로경관을 가꾸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부터 이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어 용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겠지만 경제 발전에 맞추어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각종 광고물로 인하여 저해되고 있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하여는 광고물을 건축계획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설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제도

박 문 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강사)

1.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적 시점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환경의 질, 감각적인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획일화된 생활환경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도시경관의 질적인 향상과 개성있는 지역 이미지의 창출이라는 테마로 많은 도시정비 시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경관이란 대상은 정비 후에도 그 효과를 판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개성있는 도시환경의 정비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지방 공공단체들 중에는 도시정비의 과제로 「새롭고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경관은 「보이는 환경(Visual Environment)」이라고 한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景」과, 주관적으로 바라 보는 주체로서 「觀」이 합성된 말이다. 따라서 그곳에 살면서 그 경관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도시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행정(공공)측의 관심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시민의 참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들면 「강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등 지역주민의 운동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제도화하는 행정측의 대응이 있다. 또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에도 공공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스템이 강구되고 있다.

2. 도시경관 관련 제도의 변화

일본의 도시경관에 관한 제도는 1919년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 도시미에 관한 제도를 설치하므로써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시 전체의 미화가 주된 관심사였다.

전후에는 1964년의 鎌倉 鶴岡八幡宮의 풍치 파괴를 막기 위한 가마구라 풍치 보전회(財)의 건립을 비롯 京都시가지 경관조례 등 보존수경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역사적인 경관 유산을 보존, 활용하려는 이 움직임에는 시민단체, 지방 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

1965년 전후부터는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 조례의 제정, 지구계획 제도의 도입, 도시경관 형성 모델 사업의 실시 등 경관의 정비 유도의 움직임이 주종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1 참조)

3. 일본의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

1) 법률에 의한 규제, 유도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민간의 건축물이나 옥외광고물 등은 도시경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양호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건축물 등의 적절한 규제, 유도가 불가

(그림 1)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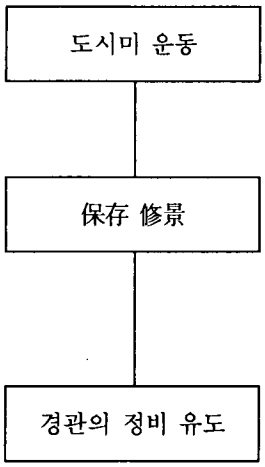

풍치지구의 창설(1919년)
미관지구의 창설(1919년)
도시미협회의 설립(1925년)

鎌倉풍치보존회의 설립(1964년)
丸の內의 미관 논쟁(1965년)
京都市 시가지 경관 조례(1972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의 창설(1975)

요코하마 도시 설계(1975년 후반)
고오베시 경관 조례(1978년)
지구계획제도 창설(1980년)
도시경관 형성 모델 사업의 창설(1982년)
나고야시 등 경관 조례 제정(1984년)

결하다. 이에 대한 규제, 유도는 국가 법률, 조례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보다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이 유도되고 있다.

① 미관지구 : 시가지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 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한다. 미관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사권의 제한이 가능한지 그 제한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다.

② 풍치지구 : 시가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구내의 건축행위, 택지조성 등을 규제한다. 어느 정도까지 개발 행위, 건축행위 등을 인정하면서 승인의 의무를 두어 전체적으로 풍치의 유도가 되도록 한다.

③ 지구계획 : 건물의 형태, 공공시설의 배치 등으로 일체적으로 정비, 보전한다. 실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물 부지의 용도, 형태, 디자인 등을 규제한다.

④ 건축협정 :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형태, 디자인 등을 관계 권리자 전원 합의로 체결한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구역내 토지 소유자는 그 체결 내용을 준수해야만 한다.

⑤ 종합설계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일정 비율 이상의 공지를 확보한 건축물은 건축기준법의 용적률 제한, 사선 제한, 높이 제한에 특례를 인정한다.

⑥ 녹화협정 : 시민의 독자적으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협정 내용은 협정 구역, 수목 등의 종류, 식재 위치, 담의 구조 등을 포함한다.

⑦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지구 : 전통적 건조물군을 면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신개축, 수리 등을 규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녹지보전지구 : 도시내 수림, 수변 등의 우량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택지조성 등을 제한하여 현상유지적인 규제를 행한다.

⑨ 옥외광고물의 규제 : 옥외광고물은 크기, 색채, 형태, 디자인 등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때문에 다른 도시경관 요소와 조화를 시킨다든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든가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과 행정측의 대응이 연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경관 사업의 실시(추진)

가. 종합적인 정비에 의한 경관 형성

ⓐ「도시경관형성 모델지구」의 실시 : 도시경관 형성을 중심적으로 꾀할 지구를 모델 지구로 지정하고, 경관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책정, 그 기본계획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업을 계획적, 중심적으로 추진한다.

ⓑ「지방도시 중심 시가지 활성화 계획(Shape-up My Town)」: 각종 도시 기반시설 정비에 맞추워 沿道 건축물 등을 규제 유도하여 경관 정비를 꾀한다.

ⓒ「도시경관형성 모델도시」실시 :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 플랜에 기초를 둔 경관형성 중점지구를 대상으로 지구경관 가이드 플랜을 작성한다. 이 가이드 플랜에 근거하여 가로사업, 공원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한다.

나. 녹화에 의한 경관 형성

도시의 녹지축 정비, 도시공원 정비, 민유지(주택지, 공업지, 상업지 등) 녹화 등의 도시녹화를 경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다. 가로경관 정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 및 연도 공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녹화, 전주등의 경관 저해물의 지중화, 지구로서의 일체적인 정비, 상징가로 등 연도공간과 일체적으로 정비한다.

라. 소공간의 정비

주요한 경관 자원인 수공간의 정비 방법으로는 도시 하천정비, 고규격(spuer)제방 정비, Riverside Square 등이 있으며, 정비시에는 주변 시가지 경관의 조화를 고려한다.

마. 그외의 공공사업의 실시

도시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실시한다든가 도시고속도로의 건설, 관공청사의 건설 등 공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는 양호한 경관을 조성하도록 경관을 배려한다.

〈표 1〉 도시경관 규제 및 유도의 수법

규제 유도의 수법	주요 규제 내용	관계법령	비고
미관지구	부지내식재, 보행공간 확보	도시계획법	5지구
풍치지구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 등	도시계획법	
지구계획	부지 규모, 용도, 건폐율, 용적율 벽면선 후퇴 위치 등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권고제
건축협정	건축물 부지의 위치, 구조, 용도, 형태, 디자인, 설비 등	건축기준법	주민전 원동의
녹화협정	부지내 식재, 보행공간확보 수종, 담의구조제한 등	도시녹지보존법	주민전 원동의
전통적건조물군 보존 지구	건축행위, 수선, 색채, 변경 허가	문화재보호법	면적 보존
녹지보존지구	건축행위, 형질변경 등	도시녹지법	
옥외광고물의 규제	광고물의 크기, 위치, 색채, 형상, 디자인등 자주적 규제	옥외광고 물법	

〈표 2〉 도시 경관 형성에 관련된 사업

사업의 종류		주요사업 내용	추진기관(근거법령)
종합정 정비		도시경관형성 모델 지구 지방도시 중심 시가지 활성화 계획 도시 경관 형성 모델 도시	건설성(도시계획법)
녹	도시레벨	녹지보존 도시공원 정비 사업	건설성(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화	지구레벨	도시녹화 위한 식수5개년 계획 도시 경관 형성 모델 지구 종합녹화	
가로경관 정비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 가로녹화사업 공동구정비사업 거주환경 정비사업 역사적 지구 환경 정비 사업 Symbol Road 정비 사업 종합 도시 교통 시설 정비사업	건설성 도시국 (도로정비긴급조치법) 공동구정비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공간의 정비		하천환경 정비 사업 Riverside Square 정비 사업 특정지역 Super 堤防정비 사업	건설성 하천국(하천법)
그외 공공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고속도로변 정비 관공청 시설	건설성 (도시재개발법)

3) 지방 자치체의 대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의 신설, 조사계획의 실시, 도시경관에 관한 심의회의 설치, 조례, 요강 등의 제정 등에 의해 도시경관 행정에 임하므로써 국가의 시책보다도 먼저 도시경관에 관한 독자의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조례, 요강등의 제정이 성행하고 있으며, 거의 일본 각지에서 제정되고 있다.

가. 도시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 도시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메뉴(神戶市 도시경관 조례 등 7지구)

ⓑ 특정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메뉴(京都市 시가지 경관 조례 등 5지구)

ⓒ 도시 전역에 대한 건축물 등의 콘트롤(4지구)

ⓓ 특정 지구에 대한 건축물 등의 콘트롤(미관지구 내 등 3지구)

ⓔ 역사적, 전통적 지구 대상(京都市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 조례 등 24지구)

나. 도시경관에 관한 조직

전국적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한편으로 자치체 측으로서는 그에 따른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다든가 인재가 적은 등의 소프트한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많다. 그 때문에

자치체간의 상호 교류가 성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역사적 경관 도시 연락 협의회 : 역사적 경관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市町村이 연합하여 상호의 경험,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에 대한 요망사항을 협의한다.

ⓑ 전국 경관 행정 추진 자치체 회의 : 경관 행정은 비교적 새롭고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해당 도시들이 서로의 사례를 연구하고 금후의 경관행정의 방향등에 대한 정보 교환한다.

ⓒ 도시경관 형성 추진 협의회 : 십대 대도시에 있어서의 경관행정 협의한다.

ⓓ 전국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협의회(전통경관 서미트) : 보존지구가 있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보존지구의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시책의 추진을 꾀하고 전통경관의 보존 활용 및 주민과 지역의 문화 향상을 꾀한다.

4) 시민 활동의 대응

시민 단체의 조직, 심포지움의 개최, 표창 제도 등 시민 활동을 계발하여 시민 참가에 의한 도시경관 향상을 꾀한다.

① 토탈한 계몽 활동(도시미 심포지움 등)
② 팜플렛, 슬라이드 등(경관 계발용 슬라이드, 경관계획에 대한 홍보)
③ 심포지움, 강습회(도시경관을 테마로 한 판넬 디스커션)
④ 조직활동(시민회의 등)
⑤ 경관 표창제도(도시경관 상)
⑥ 지구레벨의 계획 책정 활동에 참여
⑦ 녹화 운동, 사업 등의 추진

4. 일본의 도시경관 제도의 특징

1) 대상과 내용적 측면

도시경관 규제의 대상은 건축의 형태, 광고물의 디자인, 색채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규제, 유도하는 것부터 풍치지구와 같이 토지이용등을 규제하므로써 결과적(간접적)으로 경관향상과 관계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구체적인 경관형성 사업의 대상도 가로, 주거지 수변, 재개발지 등 제반 도시정비 사업들과 폭넓게 연계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 사업들의 계획, 실시에 있어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므로써, 관련 사업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Level-Up시키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2) 경관 행정적인 측면

일본의 경관 행정을 보면 중앙부처(국가)는 경관형성 모델사업 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여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 레벨에 있어서는 경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책정이나 메뉴얼의 작성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선진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여 자발적으로 독자적인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경관행정은 기존의 행정분야와 달리 종합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지혜(intelligence)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자문 뿐만아니라 디자인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3) 제도의 시스템적 측면

경관을 형성하는 작업은 각기 다른 주체의 환경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공원 녹지와 학

교, 공원과 수변과 같이 관할기관이 다른 부분이 일체적으로 계획의 대상에 드는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관을 종합적으로 콘트롤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설계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프로세스를 다루는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4) 시민의 참가

시민의식이 행정을 앞서간다고 해도 좋을만큼 시민들의 환경의 질이나 경관에 대한 의식은 높고, 단체적인 운동 등의 활동으로 지속되고 있다.

경관의 형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무엇보다 좋은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公과 私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창출에 참여하고 있다.

토 론

좌 장 : 각 교수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자는 도시분야 1분, 건축분야 1분, 조경분야 1분, 그외 외부참석자로 하며 질의시간은 5분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분야에서 한양대 도시공학과에 재직중인 오규식 교수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규식 : 도시경관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경관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도시경관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라는 것은 도시경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서울시 정도 600년 기념사업회에서 옛모습찾기, 남산 제모습 찾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들이 특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반드시 역사적 관점 전통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김영대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도시경관 문제점중 중정에서 인조적 '중경'을 지적하셨는데 중정에서 인공성을 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중정에서 인공성이 혐오스러운지, 도시화가 되고 도시지가가 현저히 높아지면 가치있는 공간이 될텐데 누가 판단하는지, 평가의 주체에 있어서 일본·독일의 경우 일반대중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도시경관계획과정에서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단계에 있는지, 그곳의 문화성이 그런지, 평가란을 어떻게 선정하여 평가를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의 방안이 있다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관은 도시전체의 한시스템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도시경관이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이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정도의 우선순위가 낮게 결정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경관제도을 수립하여 시행할때 다른 여타 공존하는 가치들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건지, 일본·독일은 협정에 의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상충된 가치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해결할 것인지, 도시경관의 질이라는 것이 다른 가치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때 어떻게 될것인지, 우리가 개선시킨다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적절한 답변자가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 장 : 황기원, 김기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뒤에서 종합적으로 나올때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 처음에 대상물이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서울환경계획연구소에 계시는 건축가 현영조 선생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조 : 우리의 목표설정은 대가들의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례로 든다면 도시중에서 룩셈부르크, 스위스보다는 불란서 파리가 좋은 예라고 봅니다.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는 경쾌하고 상쾌하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루하고 단순하여 하루이틀정도 있을 만한 곳이며 자살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반해 파리는 문화, 역사, 신, 구가 있어 조화가 되어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문제는 도시설계를 할때 시각이미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에 편한 방법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환경공학적인 것과 환경교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먼지, 건물의 고층화시 바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공학이 중요하며 그후 설계, 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살만한 도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는 공간, 인간의 요구에 충족시켜주는 경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좌 장 : 다음은 조경학 전공인 대구대의 김한배 교수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배 : 공공부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김계장님께 좋은 계기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경관 업무중 도시경관심의나 도시설계의 대부분이 계절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별적인 요소들이 질을 높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게 될때 효과가 반감됩니다. 서울시는 특히 전체 도시경관의 Master Plan, 도시경관의 Guide Line 등 거시적 방법의 지침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도시설계를 심의할때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이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께서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발표하셨을때 1단계로 관리방향 설정, 2단계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며 먼저 도시경관에 대한 Master Plan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도시경관에서 중정을 차단하는 고층아파트의 벽들이 큰문제입니다.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는 주요인은 도시경관을 지배하는 Sky Line이며, 이 Sky Line의 중요한 요소가 주로 공공체의 건물입니다. 앞으로는 서울도시경관을 계획할때 공공체 건물이 지배적인 요소가 되도록 Sky Line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대 교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교 : 김기호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구상세계획(B-Plan)의 법적 규제와 도시 경관 조례 법적규제에 있어서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구상세계획(B-Plan)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화가 되는것인지, 다르다면 B-Plan은 특정지역의 법적 규제가 될 수 있고 도시경관 규제는 도시 전체적인 의미이어야 할텐데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내용상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번째로 김영대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훈 3에서 지식인이 생각할때 일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잡한 무질서 도시환경이 그 도시환경에 거주한 사람들의 강력한 자기자신의 표현이고 상업정신의 발열이라고 본다면 그 자체가 의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광고문의 형식보다는 긍정적 측면의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판이라는 것은 대중문화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계층화라는 측면에서 대중문화를 중요시 해야 되는 관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임승빈 : 기본적으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한데 예를들면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을 하면서 도시경관계획이 법적, 제도적으로 포함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도시계획 내용중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황기원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경관 요소중 용적율, 건폐율이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재 보존정책을 보더라도 그당시에 따라 주변 100m, 50m내의 규제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 가지고 얼마나 서울시 전체의 이미지가 높아지겠는지?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4대문안은 지금 올라가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10~15층은 고도절대제한으로 하여 그 이상은 짓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4대문안은 외국처럼 선거를 해서 시장, 대통령이 바뀌어도 용적율, 건폐율이 변화하지 않는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도시경관과가 생겼으니 도시경관 측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환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호 박사님께서 일본의 경관 Guide Plan을 말씀하셨고 슬라이드로 봤지만 지구상세계획, 도시설계에서 중복이 되는데 김기호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경관 Guide Plan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도시설계와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충관계가 될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는 경관영향평가법이 도입되어 경관영향평가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도시지역에서도 실행해야 하며 서울시에서도 25~30층 정도의 건

물에 경관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병태 : 작년에 광주시 도시경관에 관한 연구를 끝낸 상태입니다. 본인이 서울시를 시찰하면서 느끼었던 문제점과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청 경관은 체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의 구성인원에 있어서 토목, 행정, 건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도시설계, 도시조경 전공자가 없는데 서울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선진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경관과의 체계에 있어서 고칠 의향은 없는지, 좋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기금의 조성이 필요한데 경관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진환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황기원 교수님게 여쭙고 싶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예로 아파트의 경관을 심의할 때 과거의 박스형 수준에만 왔다갔다하는 심의를 하고 미기후(풍향 등)를 등한시하는 너무 형태위주로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관심의의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박문호 박사님께 질문합니다. 경관계획, 경관보존은 시민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의 계몽운동, 시민과 관이 함께해서 경관계획을 해나가는지? 관청에서는 시민의 유도등을 어떻게 꽤해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 장 :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경관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정한 박사님께서 의견이나 부분적 질문에 답변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한 : 1~2가지 질문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시경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미국·일본에 비해 한국은 시작단계입니다.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실행하기 시작했고 동경도에서는 현재 Master Plan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20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동경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작성하였으며 구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기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경관 보존, 육성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주거단지에서 고층과밀화, 재개발 지역에서 고층고밀화 문제가 잘못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관문제로 수준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용도규제만 되어 있어 층수, 밀도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층수, 밀도에 있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관리 방안에 있어서 2단계의 기본계획이나 Guide Line의 설정이 실패했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미루는 것은 Guide Line을 아무런 시민의 합의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제도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내 제도의 문제, 외국의 제도 문제, 관리방안의 문제 등을 파악 검토한후 서울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정립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독일·일본이 추진해 올수 있었던 것은 제도나 법이 잘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전문가, 시민, 관과 시민의 협조의식이 싹터있는 것을 바탕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조례로 규정하고 Master Plan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문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분위기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의 방향정립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의 자리를 만들어 꾸준히 노력해야지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좌 장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토론자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 아파트 도심고밀화 문제에 있어서 관악구에서 달동네 재개발 등 고밀화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선거공약식으로 어떻게 짓겠다 등의 방식으로 시민과 협상하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을 보면 과욕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조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이라고 하면 방법론은 여러가지로 파악이 가능한데 현상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경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하는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때, 지난 80년대 초에 있었던 지구상세계획제도·도시설계제도 등도 외국것을 바로 도입했다는 데서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관계획도 시간을 두고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아니니까, 불분명한 계획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므로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ky Line은 도시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남산에서 볼때, 지금은 상업건물이 우점종이지만 일제시대에는 총독부 건물이, 조선시대에는 왕조건물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것에 대한 조정없이 겉모습에 치장만 바꾼다는 것은 결국 내과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 가치가 달라지면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이 바뀌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이 추하다고 하는 것은 학자나 여러가지 무리가 자기나름대로 궁리하여 그려낸 무리가 모여 있을때 추하게 보인 것인데, 개체의 노력이 전체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찌그러진 가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나타난 것은 찌그러진 모습일 뿐입니다. 문화의 궁극적 목표가 창의력, 창의성에 있는데 누군가의 창의성이 다리가 되어야 되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창의력을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김영대 : 고층아파트의 중정에 있어 비단 서울뿐만아니라 특히 중소도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밀도의 도시에서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거의 비슷하게 개발업자들이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하루아침에 1~2층 Sky Line옆에 20층 건물이 우뚝 세워지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계획 차원이나 건축의 여러수요 그것만 아니고 시장경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방안의 하나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을 많이 후퇴해서 저밀도 주거와 고밀도 건물사이에 또 다른 녹지대 같은 완충의 중정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 되는 지대에 가보면 학교부지를 매각하거나 학교를 많이 짓고 있는데 수평적으로 대단히 긴 건물이 시각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긴 한단위의 건물을 짧게, 비록 건물 건물의 사이가 좁더라도 여러채로 나누어서 시각적인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들은 건축쪽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이며 시각적 경관의 질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 될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점점 부각되어 높아질 때 그러한 노력들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환경에는 지저분한 뒷골목도 필요하고 깨끗한 쪽도 좋아할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혼잡하고 시각적인 공해가 오히려 좋은 것으로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느 도시든, 어느 한 지역이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며, 예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밤에 보면 주로 빨간색, 초록색 네온싸인 중심의 광고들이 많은데 전체 시가지가 유흥가 같은, 장소에 따른 절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대중음식점의 출입문에는 음식점의 메뉴를 붙여서 건물전체의 facade가 광고화되는 경향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나 싸고 쉽게 광고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원리도 있어 만연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좀더 새로운 간판, 광고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쇄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과 간판쟁이에게만 맡기고 디자이너에게는 소외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호 :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독일과 한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B-Plan과 도시경관조례의 차이에 있어서 B-Plan은 필지내에 있는 작은 블럭내부에 다룰 수 있는 협지적인 규제이고 경관조례는 어떤 Area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가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B-Plan은 개발의 행위가 예상될때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과 그 이외에 도로, 교통,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하며 경관조례는 관계없이 도시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의 앙상블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협지적인 것이냐 일반적인 것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도시설계, 경관, Guide Plan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에 있어서 별도의 법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위한 Master Plan내지 Design을 만들되, 만든것들이 기존 도시조성을 위한 구속력을 가진 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영향이 주어져 거기서 흡수해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도시설계, 상세계획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구속력있는 법적 수단들이 도시경관계획, 설계를 위한 실행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법규들이 경관적인 측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변화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속력이 많지 않고 큰 칼 밖에 없습니다. 즉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 고도지구,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경관의 틀을 만들고 지금계획 아래로 미세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도시설계, 상세설계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과 계획이 있는데, 계획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Guide Line적 유도를, 사업은 공공적인 것으로 가로부분 정비사업 등 빠른 시간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관 측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한다면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구조적인 작업과 그 아래 미세한 작업을 조절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과 공공별 사업과 공공부분의 조성사업, 하천변, 가로변, 산책로 이런 사업을 동시에 실행하면 어느정도 뭔가 잡혀갈것 같습니다.

김진환 : 4대문 중심으로 여타질문에 응답하겠습니다.

4대문안의 건축기준이 79년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4대문내에서는 고층건물을 억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건축물을 억제했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4대문내에 5~25층까지 지역별로 고도기준을 만들어서 Sky Line을 형성토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고 서울 도심공원을 정비해야 된다는 공익 차원에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도심재개발지역부터 고쳐지기 시작해서 일반지역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고도제한을 하지않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4대문안의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한옥보존구역에 있어서도 80년대 초반에 보존을위해 노력했으나 집단민원이 수년간 계속되고 개발해야 된다는 욕구가 강하여 1991년도는 건축규제를 한옥 비슷한 건물로 짓도록 했으며 저층개발을 유도하도록 건축기준을 만들고 한옥보존자체는 폐지를 했습니다.

또하나, 남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도기준을 만들고 도시계획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1992년초에 입안이 만들어졌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자체에서 결정하면 바로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시의회에서 동의를 걸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의식과 우리가 끌고나가야 하는 방향이 어느선에서 절충되느냐가 고충이며, 고도지구지정에 있어서 시민의 동의없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되어 이 부분에 있어 서로간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도 이런점에서 점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의 인원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행정직 많고 건축직, 토목직, 조경분야, 전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설계를 해온 직원들이 있으면 좋으나 실무에 자주 접하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전문분야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관보존에 따른 기금조성 문제는 주민이 반, 시·관에서 반을 부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경관심의를 실시하면서 기준안 마련에 있어 외부적으로 통일을 했었습니다. 현재 심의기준의 첫째 목적으로는 획일화되어 있는 경관을 개성을 갖고 주변과 어울리느냐에 맞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기준을 만들었을때 일반 설계사무소쪽에서 심의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또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킬까봐 심의기준 자체를 안만드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박문호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민 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관 행정, 주민 참여에 있어서 서구 어느나라보다 일본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사는곳이니까 내가 가꾼다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건축의 높이 등 모든 면에서 기본의식이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관측에서도 대응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로 도시경관에 대한 Master Plan을 만들시 그것을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팜플렛을 나누어 주며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시민이 참가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쪽에서 2가지 측면이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 국민의식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 경관에 관한 의견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경관문제라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시점에서 가치를 갖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방법으로서 부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경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1년동안 해온 연구의 결과를 공개하여 중간단계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1개 시민으로서 어떤식으로 변해가야 되는지, 관청에서는 어떤식으로 전개 해가는지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공개는 기존매체를 이용해 중간 과정을 노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시민의 수준을 높여주고 뒷탈이 없는 Guide Plan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 장 : 장시간동안 발표, 토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씨앗이 되어 또 다른 활발한 경관세미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우리가 사는 곳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식과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둘째로 도시경관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영역 상호간의 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초기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그런의미로 볼때 여러분야에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